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
번호

1201

발의년월일 : 2015. 11. 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의외

1. 개정사유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 (제명, 안제1조~제2조, 안제4조~제6조)

3. 근거법규
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명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하고,
제1조 중 “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(이하”의회“라 한다)”를 “제9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”로 하고,
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”를 삭제한다.
제2조 중 “①의회의”를 “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의”로 하고,
“②사무국장은”을 “② “사무국장은”으로 한다.
제4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외에”를 “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”로 한다.
제5조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제6조 중 “관하여”를 삭제하고,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정수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 (생략). ② (생략).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p>	<p>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9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--. ② 사무국장은 ----- -----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전문위원은 -----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국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직원의 정원) ----- -----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-----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 -----</p>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1201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5. 11. 23.(월)
- 나. 제출 자 : 권태호 의원 외 4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11. 2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12. 8.(화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)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
(제명, 안제1조~제2조, 안제4조~제6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